

## 파주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 제정이유

- 접적지역 주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건립된 파주시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동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민방위교육장은 민방위교육·훈련뿐 아니라 각종 공연·집회 및 혼례식·회갑연등 일반주민의 의례행사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나. 교육장은 파주시에서 관리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교육장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사전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장은 허가 받은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제8조)
- 라.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공연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총수입금중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20퍼센트를 시에 납입하도록 함. (안 제10조)
- 마. 교육장의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도록 함. (안 제14조)

## □ 검토의견

### 가. 법령적합성

- 자치단체 차원의 민방위교육의 내실화 및 민방위교육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음.

### 나. 내용타당성

- 민방위교육·훈련뿐만아니라 공연·집회 및 혼례식 회갑연등 모든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 교육장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관리를 위한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제10조 4항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한 때에는 수입금 중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20%를 시에 납입토록 하였으나 시민회관, 여성회관과의 형편에 맞게 관람수입총액의 20%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 15조(관람료등) ④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같음하여 당해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9조(사용료 납부) 2.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때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로 같음하여 당해 총수입액중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사용료를 허가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조례 제6조의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만을 납부한다.